

제205회 영등포구의회
2017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12. 5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03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존 출산장려금
대상자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출산장려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(안 제3조)

나. 출산장려금 신청기간 연장(안 제5조)

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8조 및 제21조

나. 예산조치 : 예산 반영 필요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,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.

○ 주요 개정 내용은

- 안 제3조의 지원기준을

첫째 아이 출생시 10만원을 지원하도록 신설하였고,
둘째 아이 출생시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,
셋째 아이 출생시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,
넷째 아이 출생시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,

구 분	첫째아	둘째아	셋째아	넷째아 이상
현 행	-	20만원	50만원	100만원
개정안	10만원	50만원	300만원	500만원

- 안 제5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간을 “출생신고 후 60일 이내”에서 “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”로 연장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, 그 밖에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음.
- 현재 우리 사회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, 이는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, 잠재성장률 저하, 사회보장 부담금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임.
- 따라서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양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리는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, 그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¹⁾이 수반되는 만큼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, 집행부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1) 2017년 출산장려금 예산 317,000천원 조례 개정시 1,274,300천원으로 957,300천원이 추가 소요됨.

관 련 법 령

■ 『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』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5.23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2.5.23.>

■ 『건강가정기본법』

제8조(혼인과 출산)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3. 안정된 주거생활
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5. 직장과 가정의 양립

6. 음란물·유혹가·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 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 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 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·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·출산·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, 노인단독가정, 장애인가정, 미혼모 가정, 공동생활가정,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10.17.>
-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■ 『사회보장기본법』

- 제26조(협의 및 조정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